성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, 투표연령 하향 조종(20세→ 19세)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민투표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9468호, 2009. 2.12)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신속한 정비로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

나. 주민투표권자 20세→19세로 연령하향조정

다. 주민투표권자,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,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

○ 주민등록번호 → 주민등록번호, **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**

○ 주소 → 주소, **거소, 체류지**

4. 관련법령

○ 「주민투표법」

5. 검토의견

☐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☐ **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은**

○ 행정안전부(선거의회과)에서는 **개정전 「주민투표법」**이

■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**헌법불합치결정**(2007. 6. 28. 선고)에 따라

○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○ 청년층의 선거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위하여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하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

○ **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주민투표법」을 일부개정**(2009. 2. 12 법률제9468호)하게 된 것입니다.

□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부개정된 「주민투표법」에 따라

○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자치단체의 책무 신설

○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(20세→19세)

○ 주민투표권자,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,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체수단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

○「주민투표 표준조례 일부개정안」을 마련하여 2009년 2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.

□ 따라서 우리군 에서도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

○ “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자치단체의 책무 신설” (안 제2조제4항)등을 내용으로 한 「성주군 주민투표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게 된 것입니다.

□ 결론적으로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**「주민투표 표준조례 일부개정안」**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고,

○ 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**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○ 다만, 금번 주민투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주민투표법」이 일부 개정되어 2009. 2. 12 부터 공포・시행되고 있는바

○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의회승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